

제안서 협상 합의서

서울디자인재단(이하‘재단’)과 (주)엠허스트/(주)나우컴즈(이하‘사업자’)는 「‘17서울디자인위크 운영」대행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서 협상을 진행하고자 함


- ‘사업자’는 사업의 운영목표 및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, ‘17서울디자인위크 개최를 통해 서울이 국제적 대표 디자인 도시로 확립 될 수 있도록 ’재단’과 긴밀한 협의 하에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하고, 사업 추진 시 총감독 및 ‘재단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·반영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.
- 계약 체결 후, ‘재단’이 정한 기한 이내에 세부사업 실행계획(제안서 각 항목별), 세부추진일정(일정에 따른 세부과업 포함), 전문가·시민·관계자 참여방안 및 의견수렴 방안 등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도록 한다.
 - 사업 진행 시 ‘재단’이 요구하는 시점에서 수시 감독,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, 워크숍, 리서치를 수시 진행하여,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·반영 하여 사업실행 내용 및 결과물에 성실히 반영·보완하여야 한다.
-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‘재단’과 ‘사업자’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및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계약체결 시의 계약서(과업지시서, 사업수행계획서, 조직계획서, 세부추진일정)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및 수행계획, 조직,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, 또한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.
 - ‘사업자’는 총괄 책임자 및 사업 부분별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에 책임을 다해 수행토록 하며, 주기적으로 중간업무를 ‘재단’에 보고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.
 -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간주하고 ‘사업자’는 실행하여야 한다.
- ‘사업자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‘재단’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, ‘사업자’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 시 협의한 주요일정에 차질이 있거나 사업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<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조>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.

- '사업자'는 입찰제안금액(884,290,000원_VAT 포함)예산범위에서 '재단'과 협의하에 운영계획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과업일체를 진행하도록 한다.
- 준공즉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성과품을 '사업자'는 '재단'에 납품 하여야 하며, '재단'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과품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성과품의 정산내역서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 간 협의하여 승인한 공인회계기관을 통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다.
-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 등이 포함된 성과품 일체는 소유권 및 저작권이 서울시와 '재단'에 귀속되며 모든 성과품에 대한 법적 문제시 책임은 '사업자'에게 있다.
- 사업 수행 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행정적, 법적인 업무협약이 완료되어야 한다.
- 기타 과업지시서, 사업실행계획서에 수록된 내용 및 '재단'이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위와 같이 협상하였음을 확인하고, 협상결과를 계약의 일부로 하는데 동의합니다.

2017. 5. 12.

(재)서울디자인재단	이	근	(인)
(주) 엠허스트	최	진	한
(주) 나우컴즈	김	홍	섭



제안서 협상 합의서

서울디자인재단(이하‘재단’)과 (주)엠허스트/(주)나우컴즈(이하‘사업자’)는 「‘17서울디자인위크 운영」대행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서 협상을 진행하고자 함

- ‘사업자’는 사업의 운영목표 및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, ‘17서울디자인위크 개최를 통해 서울이 국제적 대표 디자인 도시로 확립 될 수 있도록 ’재단’과 긴밀한 협의 하에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하고, 사업 추진 시 총감독 및 ‘재단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·반영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.
- 계약 체결 후, ‘재단’이 정한 기한 이내에 세부사업 실행계획(제안서 각 항목별), 세부추진일정(일정에 따른 세부과업 포함), 전문가·시민·관계자 참여방안 및 의견수렴 방안 등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도록 한다.
 - 사업 진행 시 ‘재단’이 요구하는 시점에서 수시 감독,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, 워크숍, 리서치를 수시 진행하여,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·반영 하여 사업실행 내용 및 결과물에 성실히 반영·보완하여야 한다.
-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‘재단’과 ‘사업자’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및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계약체결 시의 계약서(과업지시서, 사업수행계획서, 조직계획서, 세부추진일정)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및 수행계획, 조직,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, 또한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.
 - ‘사업자’는 총괄 책임자 및 사업 부분별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에 책임을 다해 수행토록 하며, 주기적으로 중간업무를 ‘재단’에 보고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.
 -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간주하고 ‘사업자’는 실행하여야 한다.
- ‘사업자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‘재단’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, ‘사업자’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 시 협의한 주요일정에 차질이 있거나 사업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<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조>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.

- ‘사업자’는 입찰제안금액(884,290,000원_VAT 포함)예산범위에서 ‘재단’과 협의하여 운영계획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과업일체를 진행하도록 한다.
- 준공즉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성과품을 ‘사업자’는 ‘재단’에 납품 하여야 하며, ‘재단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과품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성과품의 정산내역서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 간 협의하여 승인한 공인회계기관을 통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다.
-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 등이 포함된 성과품 일체는 소유권 및 저작권이 서울시와 ‘재단’에 귀속되며 모든 성과품에 대한 법적 문제시 책임은 ‘사업자’에게 있다.
- 사업 수행 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행정적, 법적인 업무협의를 완료되어야 한다.
- 기타 과업지시서, 사업실행계획서에 수록된 내용 및 ‘재단’이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위와 같이 협상하였음을 확인하고, 협상결과를 계약의 일부로 하는데 동의합니다.

2017. 5. 12.

(재)서울디자인재단	이	근	(인)
(주) 엠허스트	최	진	(인)
(주) 나우컴즈	김	홍	(인)

